

제 566 호

1976. 7. 22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

편집 :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# 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1057 호 : 서울특별시문 화상조례중개정조례..... 3

제 1058 호 : 서울특별시립 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..... 4

◎ 규 칙

제 1597 호 :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설치조례시행규칙중  
개정규칙..... 4

제 1598 호 : 서울특별시사무원임규칙중개정규칙..... 5

제 1599 호 : 서울특별시지방잡급직원여비지급규칙..... 7

◎ 훈 령

제 454 호 : 서울특별시경 찰국 수사본부운영규정중  
개정규정..... 8

제 455 호 : 서울특별시구의공공시설관할에관한규정중  
개정규정..... 9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# 서울특별시

0767

229

◎고 시

제 167 호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신설일부변경결정및  
지적승인 ..... 10

제 168 호 : 도시계획시설(광장) 결정및지적승인 ..... 11

제 169 호 : 도시계획시설(지하도) 결정및지적승인 ..... 12

제 170 호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 ..... 12

◎공 고

제 162 호 : 관리처분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..... 13

제 164 호 : 기실측량실시공고 ..... 13

제 142 호 (종로구공고) : 관인개각공고(동대문부녀복지관)..... 14

◎사 령 ..... 15

◎정 점 ..... 16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 
시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  
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 
1976 년 7 월 23 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057 호

서울특별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  
서울특별시문화상 조례를 다음과  
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- 1. 인문과학부문
- 2. 자연과학부문
- 3. 예술부문
- 4. 교육부문
- 5. 언론부문
- 6. 건설부문
- 7. 체육부문

제 10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 10 조의 2 ( 심사분야 ) 각 부문별  
심사위원회의 심사분야는 다음과  
같다.

- 1. 인문과학부문 : 정치, 경제, 사회, 역사, 윤리학, 철학, 언어학등 인문 사회과학 분야
- 2. 자연과학부문 : 천문학, 물리학, 화학, 생물학, 지학, 의학, 약학, 원자학, 전기공학, 전자공학, 조선 공학, 토목공학, 건축공학등 자연 과학분야
- 3. 예술부문 : 문학, 미술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공예, 조각, 회화, 사진, 서예, 국악등 예술분야
- 4. 교육부문 : 가정교육, 학교교육, 사회교육등 교육분야
- 5. 언론부문 : 신문, 잡지, 출판 및 방송등 언론분야
- 6. 건설부문 : 토목, 건축, 기능, 기계 등 건설분야
- 7. 체육부문 : 학교체육, 사회체육등 체육분야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◎ 서울특별시 조례 제 1058 호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회교육감 하점생인

1976. 7. 24

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  
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별표중 명칭 "청독도서관  
위치"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1번  
지를 신설한다.

제 4 조 "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  
한다"를 "관장은 지방부이사관  
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"로  
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
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 설치조례  
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 
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

1976년 7월 22일

◎ 서울특별시 규칙 제 1597 호

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설치조례  
시행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 설치조례  
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제 1 항 제 1 호중 "근우회관"  
을 "중구 부녀복지관"으로 하고  
동조항 제 2 호중 "양지회관"을  
종로구 부녀복지관"으로 한다.

제 2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  
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탁아에 대한 지도 및 부녀자를  
위한 기술교도 사업을 한다.

③기타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한  
계몽 및 지도사업을 한다.

제 3 조 제 7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기술교도 기간을 2월로 하고 별지제 5호서식에 의한 수강원서에 주민등록초본 및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4 조 제 1 항 제 2 호중 "만 16세 이상"을 "16세이상"으로 하고 동조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교도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6세이상 50세미만의 부녀자로 한다.

별지제 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

1976. 7. 28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598 호

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중 "행정과"란 제 2 호 다음에 제 3 호 내지 제 8 호를 별지와 같이 하고 "공원과"란 다음에 "운영과"란을 별지와 같이 삽입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별지제 5 호서식>  수 강 원 서	
본 적	
주 소	
주민등록번호	
성 명	19 . . . . 생
최 중 학 력	신청과목
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 3 조 7 항의 규정에 의거 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197 년 월 일  신청인 <span style="float: right;">(인)</span>	
첨부서류	수 수 료
1. 주민등록초본 1 통  2. 사진 3 매 (증명판)	없 음

실과명	위 임 사 무 명	위임구분	수임기관	근 거 및 처 용 법 규	
행정과	3. 행정서사업 허가	권한위임	구·출장소장	행정서사법제 29조 동법시행령제 22조 동시행규칙제 10조	
	4. 행정서사업 허가증 교부	"	"	"	
	5. 행정서사업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처분	"	"	"	
	6. 행정서사사무소 이전 휴·폐업, 사망, 재·개업 신고처리	"	"	"	
	7. 행정서사회 지회의 보고사항 처리	"	"	"	
	8. 행정서사회 지회감독	"	"	"	
	운영과	1. 직장민 방위대 편성지정	내부위임	"	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 18조 1항
		2. 직장민 방위대의 개편 및 해체명령	"	"	제 2 호마목 동법시행규칙제 20조 제 4항 기본법시행령제 18조 제 2 항 동법시행규칙제 21 조·제 22 조,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 18조 3항 및 동법시행규칙제 24 조
3. 연합직장민 방위대 지정		"	"		

서울특별시 지방잡급직원 여비지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

1976년 7월 22일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599 호

서울특별시 지방잡급  
직원 여비지급규칙

제 1 조 ( 목적 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 지방잡급직원 ( 일용잡급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 ) 이 공무수행을 위한 국내 출장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 근무지의 출장여비 ) 지방잡급직원의 근무지의 출장에 대한 여비징액은 " 서울특별시여비조례 "

(이하 「여비조례」라 한다)

별표 2 여비정액표중 제 6호 해당자 각종 여비정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3 조 (근무지내 출장여비) 잡급직원의 근무지내 출장에 대하여는 1일 2키로미터 이상이고 3근무시간 이상인 출장에 한하여 「여비조례」 별표 2 여비정액표중 제 6호 해당자의 현지교통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 조 (준용규칙) 잡급직원의 여비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것에 제외하고는 「여비조례」 및 서울특별시 여비지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훈 령

서울특별시 경찰국수사본부운영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76년 7월 22일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

◎서울특별시훈령제 454 호

서울특별시경찰국수사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

서울특별시경찰국 수사본부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 조 (수사본부의 설치) 경찰국장은 관내에서 특별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5조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하여 그 사건을 특별수사하게 한다.

제 5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수사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찰국장이 지명한다.

- 1. 경찰국 제 2 부국장
- 2. 경찰국 주무과장
- 3. 관내에서 3 개이상의 본부설치 대상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찰국 수사과장
- 4. 관할지 경찰서 수사과장

제 6 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사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.



1. 경찰국 제2부국장이 수사본부장이 되었을 때

가. 경찰국 주무과장

나.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찰서의 서장

2. 경찰국 주무과장이 수사본부장이 되었을 때

가. 경찰국 주무계장

나.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찰서의 서장

3. 경찰국 수사과장이 수사본부장이 되었을 때

가.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찰서의 수사과장

나. 경찰국장이 지명하는 경정 또는 경감

4. 관할지 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본부장이 되었을 때에는 해당 경찰서 형사계장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구의 공공시설관할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76년 7월 23일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

◎ 서울특별시훈령제 455 호

서울특별시구의 공공시설 관할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구의 공공시설관할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 중 제 6 교량난에 순위제 11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순위	명 칭	위 치	해 당 청	관 할 청	합 계
11	잠수교	용산구와강남구경계	용 산 구 강 남 구	용 산 구	교량의전부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67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신설  
일부변경결정 및 지적승인

1. 당시 관내도시계획시설 (도로) 을  
다음과 같이 신설, 일부변경 결정  
하고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 
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

설부고시 제 123 호 (73.4.4) 의 권  
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  
2.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 
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 
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 
게 보이게 한다.

1976. 7. 19

서울특별시장

※ 도로결정,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 
조서: 별첨

로 선 조 서

○ 도로결정,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 장	기	점	종	점	비 고
신설	소로	1		10 <sup>m</sup>	65 <sup>m</sup>	서대문구연희동 165의 12	연희동산 4의 30			
"	"	2		8	110	연 회 동 4 의 29	연희동산 2의 65			
기정	"	3		6	114	성동구자양동 1의 53	자양동 1의 53			
변경	"	—		—	—	—	—			폐 지
기정	"	3		6	110	자양 동산 10 의 1 앞	자양동 1의 53앞			
변경	"	—		—	—	—	—			폐 지
신설	"	3		6	35	마포구상수동 98 의 1	상수동 72 의 1			
기정	"	3		6	330	종로구명륜동 1 가 46-18	명륜동 1가 100-1			
변경	"	2		8	330	"	"			폭원 확장
기정	"	2		8	440	성북구하월곡동 84의 1	하월곡동 74의 2			하수도복개 구간위 치 및 폭원
변경	"	1		10	440	"	"			
기정	"	3		6	180	을지로 1 가 ( 대 3 - 2 )	남대문로 2 가 82			
변경	—	—		—	—	—	—			폐 지
신설	소로	2		8	240	성북구하월곡동 77의 34	하월곡동 77의 39			지번은 분 할 예정지 임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 장	기 점	중 점	비고
신설	소로	2		8 m	280m	하월곡동 77 의 580	하월곡동 77 의 469	
"	"	2		"	294	" "	" "	696
"	"	3		6	176	" "	" "	108
"	"	"		"	190	" "	" "	75
"	"	"		"	230	" "	" "	-388
"	"	"		"	176	" "	" "	46
"	"	"		"	300	" "	" "	955
"	"	"		"	170	" "	" "	112

별첨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. 끝.

◎ 서울특별시 고시제 168 호

도시계획시설(광장)결정및지적승인

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(73.4.4) 의 권한 위임사

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의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7.20

서울특별시 장

가. 광장결정조서

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광 장 (미관광장)	마포구 상수동 72 의 1 부근 일대	1,445㎡ (437 평)	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. 끝.

<p>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9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(지하도)결정및지적승인</p> <p>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지하도)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적 승인을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가. 지하도시설 조서</p>	<p>123호(73.4.4)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 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6.7.21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-	---

구분	시설명	위치	규모	비고
신설	지하도	영등포 시청앞	20.2m × 154m	지하보도상가
"	"	시경 앞	24.2" × 70"	"
"	"	종로 4가-청계천	16.4" × 144"	"
"	"	방산시장앞	25m × 36"	"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. 끝.

<p>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0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</p> <p>1. 건설부 고시 제 201호(75.12.17) 제 8 호(76.1.21) 및 제 46 호(76.4.7)로 시설 결정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</p>	<p>고시 제 123호(73.4.4)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6.7.22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-	---

가. 지적승인조서							
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대로	2	50	30 m	3,120m	왕십리광장	압구정동	왕십리광장-성수1 가 685의 373 간지적 고시
	3	26	25-40m	9,100m	한강로3가	행당동광장	금호1가1533-금 호4가308 간지적 고시
총로	1	149	20 m	300m	중 1-135	성동교부단	

별첨도면 표시와 같음. (도면생략)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62 호

관리처분계획일부변경공공합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198 호 (75.12.3) 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바 있는 면목 1,2 구역내 일부분양대상자의 거주확인 (70.6.20 이전 건물) 미비로 보류한 11 세대중 8 세대에 대하여 분양예정자지정을 도시계획법제 86 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55 조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

그 내용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3 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분양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.

2. 관계도서는 주택국 주택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토지점유자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.

1976. 7.20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64 호

기본추량 실시공고

1. 측량법제 8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, 아래와 같이 당시 관내 기본측량을 실시하게 되었음으로 동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.

1976.7.21

서울특별시장

가. 측량의종류 : 3, 4등 삼각 측량 (삼각점 820점)

나. 실시기간 : 76.7.5-12.31

다. 작업지역 : 서울특별시 일원

라. 사용장비 : 경위의 지형도 및 부속장비

마. 실시기관 : 국립지리원

바. 기타사항 : 본 작업은 산간고지의 정상에서 실시함.

◎종로구공고제 142호

관인개각공고(동대문부너복지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1047호 (76.6.22) 로 "동대문부너복지관"이 "종로부너복지관"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관인규정제 9조 및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각 및 폐인하였기에 공고한다.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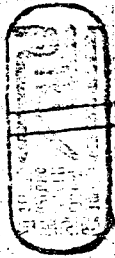
1976.7.2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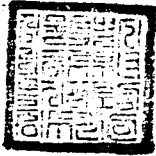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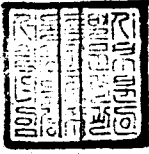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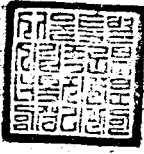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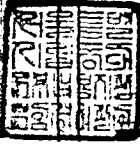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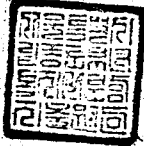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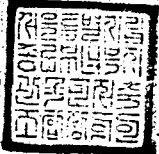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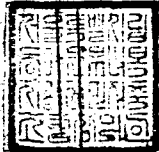
종로구청장

1. 갱신사용일자 : 1976.7.22

2. 직인의 인영 : 별첨

종로구부너복지관계인및폐인

	계 인	폐 인	계 인	폐 인
관 인			계 인	 

계 인	폐 인	계 인	폐 인
분임 징수 관 		분임 경리 관 	
분임 물품 출납 원 인 		분임 지출 원 인 	
분임 수입 원 인 		국민 저축 조합 인 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사 령</div> <p>© 1976.7.20            성 북 구 서 기 관 김 영 수           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           1. 2 호의 규정에 의거</p>		<p>전책에 처함.            세무조사과 지방행정 공 순 권.           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           1 항 2 호의 규정에 의거            그 직위를 해제함.            © 1976.7.21</p>	

<p>도시가스 지방행정 사업소 주지사 이 현 의</p> <p>지방공무원법제 63 조의 1 규정에 의거 휴직을 명함.</p> <p>서대문구 지방토목사 박 동 식</p> <p>종로구 근무를 명함.</p> <p>동대문구 지방토목사 이 영 재</p> <p>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</p> <p>지하철본부 지방기체원 이 현 복</p> <p>영등포구 근무를 명함.</p> <p>성 동 구 지방농림사 유 금 중</p> <p>감사담당관실 근무를 명함.</p>	<p>관악구 지방토목 임 재 남 기사보시보</p> <p>도시계획과 근무를 명함.</p> <p>은평출장소 지방보전 고 등 우 기사보시보</p> <p>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</p> <p>© 1976.7.22</p> <p>영 선 과 지방건축 이 문 기 기사보시보</p> <p>지방공무원법제 6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휴직을 명함.</p>
---	--

서울특별시장

정 정

시보제 563 호 (76.7.6) 에 게재된  
훈령제 453 호 (서울특별시립병원중사원  
급식규정중 개정규정본문중 제목) 와  
시보제 564 호 (76.7.13) 에 게재된  
조례제 1054 호 (서울특별시 도시가스

공급조례중 개정조례) 중 아래와  
같이 오석이 있으므로 이를 정정  
한다.

1976. 7.24

서울특별시장

구분	페이지	오 류 사 항	정 정 사 항
훈 령	6	서울특별시립병원중사원 개정중 개정규정	서울특별시립병원중사원 급식규 정중 개정규정
조 례	1,3	서울특별시 가스공급조례중 개정 조례	서울특별시 도시 가스공급조례중 개정조례